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0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2월 12일

발 의 자: 송재혁,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35명)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최근 교육부는 학생인권 조례 표준안(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10.16)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관련 다수의 제·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이에 따라 제출·발의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통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 당초 : 23.2.14.~24.2.13.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 연장 : 24.2.14.~25.2.13. (1년 연장 기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학생인권 관련 제출·발의 안건 목록(별첨)

별첨

학생인권 관련 제출·발의 안건 목록(별첨)

연번	건명	제출자 (제출일자)
1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 (2023.02.14.)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함.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2023.03.13.)
2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정책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성숙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 등의 책무와 교육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인권상담실 및 교육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채수지 의원 대표발의 (2023.08.14.)
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가 침해될 때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상호존중 중에 기반한 성숙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자 함.	김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08.14.)
4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책무와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학생의 책무 조항 및 학생의 책임을 명시한 별도의 장을 신설)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2023.08.14.)
5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교육감 (2023.10.16.)
6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및 보호자)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김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12.06.)